

## 기록관리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 관한 단상(斷想)\*

A Study on the Virtuous Cycle Structure of the Archival Ecosystem

김장환(Kim, Jang-hwan)\*\*

1. 들어가며
2. 첫 번째, 기록학계라는 생태계의 위기
3. 두 번째 연결고리, 기록전문가의 전문성과 자격제도
4. 공공 영역에 갇혀버린 기록관리법
5. 그리고, 산업계의 고사
6.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의 방향성, 전문성과 지역화

\* 이 글은 2019년 국가기록원에서 개최한 기록의 날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기록정보학 박사(skujjang@hanmail.net).

■ 투고일: 2023년 12월 28일 ■ 최종심사일: 2024년 01월 01일 ■ 최종확정일: 2024년 01월 21일.

■ 기록학연구 79, 83-120, 2024, <https://doi.org/10.20923/kjas.2024.79.083>

## 〈초록〉

이 논문은 기록관리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전반을 다루고 있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기록관리 생태계는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기록학이라는 학문은 정체되어 있으며, 기록관리 실무 현장은 공공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민간 영역의 기록관리 인프라는 미약하며, 산업계는 고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기록공동체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대부분 공공기록관리 영역, 그중에서도 현장의 문제점에 집중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록학계와 대학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기록전문가의 전문성과 자격제도, 공공 영역에 국한된 기록관리법, 그리고 산업계의 어려움까지 기록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전문성과 지역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주제어 : 기록관리 생태계, 기록학계, 기록관리 전문성, 지역성, 공공기록관리**

## 〈Abstract〉

This paper cover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archival ecosystem.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cords Management Act, the archival ecosystem has grown rapidly, but in retrospect, the discipline of archival science has stagnated, records management practice is overly concentrated in the public sector, the records management infrastructure in the private sector is weak, and the industry is failing. In recent years, the archival community has continued to discuss these issues, but mostly in the context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especially in the field. In this article, we look at the archival community as a whole, including the problems of archival academia and universities, the professionalism and qualification system of archivists, the Records Management Act limited to the public domain, and the difficulties of the

industry, and propose alternatives in terms of professionalism and localization,

**Keywords :** archival ecosystem, records management academia, archival professionalism, localization, public records management

## 1. 들어가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다. 기록관리법 제정 후 누군가는 웃고 울며, 혹은 화내고 욕해가며 이야기하는 기록인의 애환을 글의 형태로 다시금 정리해 보고자 한다.<sup>1)</sup> 어쩌면 정말 중요한 문제는 누군가의 목소리 안에, 또는 누군가의 글 한 켠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sup>2)</sup>

자연 생태계 속에서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균락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서로 독립된 유기체들이지만, 상호작용하고 먹이사슬 관계를 이루며 조화롭게 살아간다. 풀과 나무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사슴은 풀을 뜯어 먹으며 살고, 늑대는 사슴을 잡아먹고 산다. 그런데 이 먹이사슬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혹자는 기록공동체라고 하는 생태계를 사슴만 가득한 자연으로 묘사한 바 있다(이영남, 2019, 10). 어쩌다 기록관리 생태계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까? 기록관리법이 제정되던 20여 년 전만 해도 기록관리 생태계는 그

- 
- 1) 이 글은 사사에서 표기한 바와 같이 2019년 기록의 날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발표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이 축적되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처럼 공회전하고 있어 뒤늦게 투고를 결심했다.
  - 2) 연구자는 기록의 날 학술행사 당시 이 글을 준비하면서, 여러 기록인이 쓴 수많은 글들을 읽고 주변 기록인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 하나하나 버릴 게 없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기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는 과정은 충분히 의미 있는 행위였다.

어떤 곳보다 역동적이었다. 언제나 다이내믹한 한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욕구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기록학이라는 학문이 태동하는 순간이다. 이어 교육원과 대학원이 생기고,<sup>3)</sup> 전문가 집단이 배출되었다. 현장에 전문가 집단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를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산업계의 각종 전문 기업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영남(2018)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형성을 담론(discourse)의 질서로 설명했다. 기록학이라는 지식체계가 생기고, 그 지식체계는 법·제도를 통해 더욱 공고화되고, 기록학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그 담론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전문가 집단(아키비스트)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과 각종 실무들……. 이처럼 기록학이라는 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미셸 푸코가 분석한 권력의 계보학적 탄생 과정과 일치한다. 다만, 그 과정이 불과 20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척 놀라울 따름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 개발독재라는 담론이 지배하던 시기에 우리는 그 덕에 배고픔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지만, 반면 그 처절한 역효과도 지금까지 겪고 있다. 성장주의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우리 기록관리 생태계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곽건홍, 2009, 3-35). 극단적인 중앙집권적 발전의 길을 걸었던 우리 기록공동체는 고속 성장이라는 결실을 얻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 여러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집권적 발전의 동력이 약해질 경우 쉽게 ‘공든 탑’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다(김익한, 2009, 83).

그러한 우려는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었다. 빠르게 자리 잡은 기록관

---

3) 물론 기록관리가 도입되던 초기, 교육원의 역할은 매우 컸다. 그러나 법 제정 초기의 교육원 역시 석사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이후 학사 학위로 전문요원 자격이 낮아진 교육원 체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기록전문가의 전문성과 자격에 대해서는 2장에서 논하도록 한다.

리 생태계가 어딘가 삐걱대기 시작한 것이다. 늑대가 없어져 사슴만 잔뜩 늘어난 숲은 과연 평화로울까? 사라진 늑대가 가져오는 그 생태계의 악순환이 지금 우리 기록 생태계에서도 보인다. 기록학이라는 학문은 정체되어 있고, 기록관리 실무 현장은 공공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 영역의 풀뿌리 기록관리 인프라는 미약하며, 산업계는 고사하고 있다. 생태계는 각 독립된 주체들의 상호 유기성과 연결고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기록공동체는 우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는데, 대부분 공공기록관리 영역, 그중에서도 현장의 문제점<sup>4)</sup>을 중심으로 여러 문제를 제기해왔다. 우리 기록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은 부족했던 것 같다.

어디서부터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록관리 생태계에 조화로움과 긴장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까? 이 글은 그 시작점을 ‘기록학’, 또는 ‘기록관리학’이라 우리가 부르는 학문 영역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sup>5)</sup>

## 2. 첫 번째, 기록학계라는 생태계의 위기

기록관리는 즉자적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학문적 토대 위에서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인식되어야 할 당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확립하는 게 중요했다(김익한, 1999,

4) 이를테면 1인 기록관 체제나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문제를 들 수 있겠다.

5) 사실 기록학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 역사학과 문헌정보학 사이에서 기록학은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자생적인 학문으로 기록학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생각해 볼 때, 현재의 기록학은 이제, 여전히, 시작 단계인 학문이다. 학문의 불분명함은 이하의 내용에서 논의할 기록관리 생태계의 악순환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기록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로 남기기로 한다.

83). 패스모어와 시붐(Passmore, Theebom, 2016)은 사회과학계에서 신생 분야가 탄생한 뒤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발돋움하여 정착하는 과정을 ① 경계 및 핵심 이론의 형성, ② 사례연구와 사회조사, ③ 질적 연구, ④ 양적 연구, ⑤ 메타 연구의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구분을 인정할 때 현재 기록학계의 수준은 어느 정도 신생 학문으로서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 역사학과 문헌정보학의 연구자들이 앞다투어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후 신설된 대학원에서 각종 케이스 분석을 위시한 실증적인 연구들을 이어갔으며 최근에는 양적·질적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 논문들도 눈에 띈다. 이는 우리나라가 민간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록전문가를 양성하는 영미식 프로그램을 따른 결과로, 대학을 중심으로 기록학이라는 학문이 전문가 양성과 연계되어 발달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sup>6)</sup>

그렇게 20여 년이 흘러왔다. 그 20년이 넘는 동안 이루어낸 것도 많지만, 오늘날 학계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 모습이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다음과 같은 비판의 목소리들을 들어보자. 설문원(2016)은 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기록학 대학원에서 기록학을 배울 수 없다.”라는 지적은 뼈아프다고 고백한다. “교수님들께서는 새로운 논문을 잘 쓰시지 않는 것 같고, (중략) 대학교 레포트라고 보기도 어려운 논문들을 통과시켜 부적합한 ‘전문가’를 양산하고 있어 아쉬움을 넘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취직 후에는 그냥 직

---

6) 우리나라의 기록학이라는 학문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구의 기록관리 양성 프로그램을 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대륙식 유형과 영국, 호주, 미국 등의 영미식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륙식은 프랑스 국립고문서학교(Ecole nationale des chartes)와 독일의 마르부르크 아카이브스트 양성 전문학교와 같이 국가 주도의 전문기관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제이다. 영미식은 기록관리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민간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미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최재희, 2007, 58).

장인이 되는 연구사들이 많은 것도 아쉽습니다.”라는 지적도 곱씹어 봐야 할 내용이다.

혹자는 “현존하는 두 학회지에도 예견된 재앙이 존재한다. 신진 연구자보다는 기존 연구자의 메아리와 수많은 공저자가 존재하고, 심사대에는 늘 석사논문 요약본이 올라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 내부적으로는 자기인용이 심하고 신도불이의 보고보다 여전히 외제에 건실하게 의존하고 있다. (중략) 토론은 전혀 불편하지 않은 자리가 되었다.”라고 비판한다(아키비스트 누룽지, 2016, 154).

학문은 연구자가 혼자 책상에 앉아서 혼자 독백하는 행위라 생각하기 쉽지만, 학문은 독백이 아닌 ‘대화’이다. 개인이 연구한 바를 공론장에 올려놓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비판받고 점검하며 타당성을 입증받아 그 성과가 학계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절충에 의한 억지 합의는 학문의 적이다(조동일, 1993, 23-25). 문학비평 분야에서 한때 주례비평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주례사처럼 좋은 게 좋은 비평, 이미 비평이라 부르기 민망한 비평, 지금 우리 학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반성해봐야 한다.

이 문제는 학문의 토대가 단단할 때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앞의 비판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상’에 대한 비판이지 ‘본질’에 대한 비판은 아닌 것 같다. 유관학문인 역사학이나 문헌정보학과 비교해봤을 때, 기록학 연구자가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록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교육과정이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부실하다. 특히 기록관리법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문요원 채용이 지역으로 제한되자 지방의 많은 학교에서 우후죽순처럼 대학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이 설립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 교육제도를 통한 전문가 양성은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주요 특징 중 하나니까(이승휘, 2008, 121). 그러나 부실한 교

육과정에서 배출된 전문가를 우리는 전문가라 부를 수 있을까?

이처럼 전국에 수많은 기록학 대학원이 만들어졌지만, 각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놀랍게도 학계에서 대학원의 교육과정 인증에 대한 논의는 기록학이 도입되던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전무하다. 2008년 국가기록원에서 발행한 『기록인』 창간호에서 대학원 교육과정 인증제에 대한 토론이 짧게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승휘(2008)는 각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 기록관리혁신위원회에서는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견인하고자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발전’을 혁신과제로 포함시켰다. 이 과제에 ‘대학 기록관리교육 인증제도 도입 검토’가 추진방안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국가기록원은 그에 대한 실행을 약속했다(최재희, 2007, 59).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도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 선진화전략을 수립하며 ‘기록관리 분야별 교수요원 인력풀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이승휘, 2010, 88).

문제는 당시 많은 대학의 교수자들이 공권력이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과연 공권력의 문제였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장덕현(2008)은 선(先)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인증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논의의 수위를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교육전문대학원처럼 기록관리학도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인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원·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 역시 여러 논란 끝에 많은 대학원이 의과대학으로 회귀하기는 하였으나,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제를 받는다.



교육과정과 더불어 기록학이라는 학문의 정체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임교수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기록학이 학제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학교가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법학 등을 중심으로 협동과정을 운영한다.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사학과와 세부 전공으로 운영하며 전임 교원 확보를 미룬다. 한성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국가기록원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5개 대학(26개 학과) 중 24개 대학원이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1개, 특수대학원 1개 포함)이고, 11개 대학원이 협동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3개 대학원은 사학과, 8개 대학원은 문헌정보학과 세부 전공으로 운영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20, 59).

대학원별 소속 교원을 보면, 객원교수를 포함해서 총 202명으로 평균 7.8인(최소 2인)이며, 그중 비전임 교원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의 경우 담당 교원 9인 중 8인이 비전임 교원(88.9%)이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실제 강의를 한 교원 195명만을 놓고 보면 그중 전임 교원 117명, 비전임 교원 78명인데, 조사 기간 동안 비전임 교원 78명 중 13명이 2개 이상 대학 출강(1인 최대 5개 학교 출강)인 것으로 확인됐다(국가기록원, 2020, 71-72).<sup>7)</sup>

한편, 현재 국내에서 기록학, 기록정보학 등의 타이틀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는 2019년 기준 33명인 것으로 파악된다(아키비스트라운지, 2022). 그러나 이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강단의 자리는 바늘구멍이다. 그중 전임 교원의 수는 얼마나 될지, 전임 교원 중에서도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전임 교수는 얼마나 될지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다. 연봉 수준, 연구실 제공 여부 등의 열악한 대우는 기본이고, 많은 강의 시수와

---

7) 연구실적을 보면 더욱 암울한데, KCI 등재지 기준(2016. 10.~2020. 9.) 전임 교원이 수행한 연구 중 기록학 분야 연구성과는 195명 중 118명(60%)의 연구실적이 0건이었다. 연구실적을 가진 108명의 전임 교원 중 61명은 기록관리학 외 분야의 연구실적만을 가지고 있으며, 26개 학과 중 7개 학과에서 전임 교원의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국가기록원, 2020, 73-81).

1~3년 재계약에 따른 연구실적은 비전임 교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 대학평가 시 전임 교수 확보율의 점검 방식과 기준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충실한 교육과정에는 충실한 교수자가 필요하지만 우리 기록학계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학문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적인 연구자라 할 수 있는 전임 교원의 부재는 학문의 발전에 있어 치명적이다. “기록학 대학원에서 기록학을 배울 수 없”는 이유다. 이 문제는 교육과정에 대한 품질 문제와도 다시 직결된다. 그리고 부실한 대학원 교육은 결국 부실한 전문가 양성을 낳는다. 악순환이다.

앞서 언급했던 기록학 대학원 인증제는 그래서 의미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인증제를 통해 결국 각 대학원에서는 보다 많은 전임 교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통해 학계의 연구는 더욱 깊이 진전될 것이며, 진전된 연구의 결과가 양질의 교육을 낳고, 양질의 교육은 중국엔 보다 우수한 기록관리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것이기 때문이다(김익한, 2007, 91).

연구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증제를 도입하여 대학원의 전임교수자를 확보하고 교육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여전히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선(先)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인증제가 논의된 지 이제 20년이 되어 간다. 언제까지나 선후의 유불리를 따질 수만은 없다.

아니면, 문헌정보학과와 같이 학부로 기록관리학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좀더 심도 있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도서관 분야를 보면, 대학원은 물론 학부에 전공이 생기고 전문대까지 전공이 생겼다. 게다가 교육원과 학점은행제까지 운영한다. 그만큼 박사급 교수자가 들어갈 자리는 많아졌겠지만, 그에 비례하여 문헌정보학 전공자 역시 많이 배출되었다. 1급·2급·준사서와 같이 자격증에 등급이 부여되었음에도 배출된 사서의 품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유관 분야의 경험을 고려할 때 배출 인력에 대한

정확한 수급계획과 배치 기준, 자격 제도와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8)</sup>

이도 어렵다면, 기록관리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시행령 등 법령에 명시하여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표준적인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정의하고,<sup>9)</sup> 대학원에 전임교수자 1~2인을 필수로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마저 민간에서 힘들다면,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유럽의 대륙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시행해보는 건 어떨까. 즉, 국가 기록원 같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박사급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아키비스트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의 깊이는 얇기만 하다. 그러나 필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어느 교수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 가능성을 위해 열어둔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일 것이다.

### 3. 두 번째 연결고리, 기록전문가의 전문성과 자격제도

담론은 자격증으로 관리되는 전문가 집단이 유지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되는 의사와 변호사가 그러하고, 사서와 학예사,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 그리고 우리 기록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자격증이 필요하다(이영남, 2018, 68). 현재 공공기록관리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기록관리 전문가는 관련 법규에 따라 대학

---

8) 배치 기준과 자격에 대해서는 3장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9) 이는 아래에서 논의할 기록관리 전문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역시 3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소정의 자격시험을 거친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특히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은 일정 부분 학문의 영역에 발을 들이밀고 현장에서 아키비스트 또는 레코드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우리 기록전문가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록학과 가장 근접한 학문 영역인 문헌정보학과 역사학 분야의 사서와 학예사를 보자. 사서의 경우,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며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로 자격이 구분된다. 1급 정사서부터 준사서까지 그 구분의 기준은 석·박사 학위와 도서관 근무경력 등이 복합적으로 산정되어 부여된다(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박사에서부터 석사, 학사에서부터 전문대, 교육원, 그리고 근무경력과 자격증까지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구분하였다.

학예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예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급 정학예사·2급 정학예사·3급 정학예사·준학예사로 자격이 구분된다. 준학예사와 3급 정학예사까지는 학사 및 석·박사 학위와 근무경력이 복합적으로 산정되며, 2급 정학예사부터는 근무경력만을 가지고 자격을 부여한다.

「도서관법」과 박물관진흥법에 따른 사서나 학예사의 자격요건은 말 그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가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관에 모두 적용 가능한 자격 기준이다. 전문가 자격요건과 기관의 사서직, 학예연구직 채용 조건과는 별개이다. 반면,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공공기관에 배치하는 기록관리 전문가만을 의미한다.<sup>10)</sup> 2005년 학예직렬 하위에 신설한 기록연구직은 공무원 직렬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문가의 자격에 석사학위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요원 자격이 공공기록관리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기록관리법 제정 당시 전문요원의 자격을 석사학위로 규정한 데에는 나름의 논리와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학 석사 이상으로 강제함으로써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 의도였다(이승휘, 2008, 121). 즉,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쓰면서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이었다.<sup>11)</sup> 그러나 법 제정 후 전문요원 배치가 의무화되고 2003년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된 이래,<sup>12)</sup> 우리는 몇 차례 전문요원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우선 법 제정 초기, 기존 공무원을 재교육시켜 전문요원을 배치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른 공격이 있었다(박미애, 2010, 137).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언론의 강한 반발로 이는 무마되고 전문요원의 석사학위를 우리는 지킬 수 있었다.

- 
- 10)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 법정 용어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부적절해 보인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가? 아키비스트? 레코드매니저? 기록관리사? 기록사?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직함도 명확하게 번안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어느 기록인은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박문제, 2019, 38). “기관의 행정직들은 나를 주무관, 주사, 주임, 기록사, 기록관 등 너무나 다양한 호칭으로 불렀다.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다 보니 기관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문가는 사라져버리고, 어떤 일이든 부러먹을 수 있는 하급 계약직 직원만 남게 되었다.”
  - 11) 법 제정 당시에는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를 가지거나, 문헌정보학이나 역사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교육원)을 수료하는 경우 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학 전공자가 정식으로 배출되기 이전까지,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소지자들을 일정 기간 교육하여 현장에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지수걸, 2003, 166-167).
  - 12) 왜 기록연구직인지에 대해서는 조영삼(2003)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비교적 가까운 기억으로는 2010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추진한 규제완화를 들 수 있다. 그 당시의 기억을 소환해보자. 그때 국무총리실에서는 행정내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학력 철폐’라는 명목에 따라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을 석사에서 학사로 낮추려고 시도했다. 이에 기록공동체는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를 비롯한 7개 단체<sup>13)</sup>가 모여 ‘기록관리 현안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의 규제완화는 전문가 자격과 함께 한시기록인 보존기간 1·3년 기록물을 평가 없이 폐기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무총리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 사안은 전문요원의 자격완화와 맞물려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기록전문가 제도를 훼손하는 권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이영남, 조민지, 2017, 17). 이 싸움에서 기록공동체는 절반은 이겼고, 절반은 졌다. 석사학위 자격을 지켜냈다는 점에서는 절반의 승리였으나, 결국 학사학위 소지자도 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절반은 졌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록관리학 석사가 우리의 전문성을 담보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석사학위 자체가 우리의 전문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아래 질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13)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학 전공 주임교수 협의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관리 전문가 포럼, 전국기록관리전공학생연합 등 7개 조직이 결성한 단체였다.

14) 여담이지만, 그 흔적으로 남아 있는 조직이 오늘날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다. 당시 직능단체 설립을 주장했던 기록전문가 Z는 “현안에서는 지더라도 조직은 남겨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2010년 3월 12일 효자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모임을 주도했고, 이 자리에 여러 기록인들이 모여 전문가협회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전문가인가? 우리의 전문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그 전문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혹 자체 설계된 전문성은 아닌가? 기록관리가 시작된 지 15년, (중략)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들로부터 설계된(self-designed) 전문성인지, 아니면 모두에게서 인정받는 전문성인지. (중략) 전문가 집단 15년의 역사는 그 방향성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검증받아야 한다.”(아키비스트 누룽지, 2016, 149)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을 시작한 지 15년차가 되는 연구자는 위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성을 말하는지, 그다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결국 ‘기록관리 직무능력(competency)’으로 연결된다. 동시에 교육과정의 구성과도 깊게 관련된다. 기록학은 실천적 학문으로서,<sup>15)</sup> 그 학문의 정체성은 교육과정으로 외화되고, 교육과정에는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게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 직무능력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0년 학사학위로 전문요원 자격이 완화되고 대신 전문요원 자격시험을 치르게 되면서부터이다. 즉, 시험평가 영역과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직무능력 분석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 기록공동체에는 자격시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기반으로 전문지식을 내실화하고, 이를 교육과정 안에 표준화하여 담아내는 과제를 강제로 떠안게 된 것이다(이소연, 2011, 128).

---

15)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지식을 의미하는 에피스테메(episteme)를 테오리아(theoria), 프락시스(praxis), 포이에시스(poiesis)로 구분하였다. 그중 프락시스는 오늘날 ‘practice’에 해당하는 ‘실천적 지식’을 의미한다. 칼 맑스는 이러한 프락시스 개념을 인간의 유물론적 변화를 질적으로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응용했다. 필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기록학을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실천이 아닌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실천적’ 학문이라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정의된 직무능력은 공공기록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잠시 논의의 방향을 틀어보자. 최근 민간에서는 기록관리, 또는 아카이브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김익한(2007)은 공공 영역 기록관리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의 강제력 밖에 있는 일반 사회조직이나 기업에서의 기록관리는 아직 후진적 상황에 있는 기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게 벌써 20년 전 일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년이 넘게 흘렀으나 크게 나아진 바는 없다. 시민사회가 기록관리에 무엇인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수요와 욕구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경기도 파북공동체에서 마을기록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군포문화재단 군포책마을에서도 시민기록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다. 원주에서는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주최로 기록문화시민학교가 열리고, 자발적 주민모임인 정릉마을기록이야기마당(정말기록당)도 마을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손동유, 2019, 50-51). 이처럼 기록관리는 지역화(localization)의 움직임이 선명하다.<sup>16)</sup>

우리 공공 영역의 소위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에서 무관심해하는 사이, 시민사회에서 작은 아카이브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기록관리, 또는 아카이빙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과연 우리가 배운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그리고 우리가 정의한 직무능력 영역에, 이러한 민간의 기록관리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NAK 표준에 따라 우리는 그러한 시민사회의 욕구에 응대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비단 국가기록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공기록관리 체계 내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

16) 다만, 민간 영역 중 가장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 기업기록관리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AM 영역에서만 일부 성과를 보였을 뿐, RM 영역의 기업기록관리에 대한 진전은 거의 없다는 점은 무척 아쉽다.



서구 사회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전반을 기록화한다는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법론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민간에서 생산·수집한 기록은 기존 공공 기록 관리 방식에서 다루지 않았던 생소한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기록공동체는 아래로부터의 기록관리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눈을 돌렸지만, 곧 스스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개념과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윤은하, 2012, 8).

따라서 현재 대학원에서의 기록관리 커리큘럼에서부터 민간 영역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대폭 바뀌어야 한다. 실제 민간 분야에서 일을 하다 기록관리에 관심이 생겨 부푼 마음을 간직한 채 기록관리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공공기록관리 과목들 속에서 허덕이며 실망하는 이들을 찾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커리큘럼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전문요원 역시 민간 영역에서 공공기록관리 담론에 따른 지식과 실무로는 별다른 기여를 하기 어렵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에서부터 이에 대한 교육과정 세팅이 필요하고,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기록관리 전 분야에 활용가능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절차와 방법론도 필요하다(김정은, 김익한, 2012, 44).

다만, 모든 민간 영역의 기록관리를 커리큘럼화하고 직무능력표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기록, 스포츠기록, 음악기록, 영상기록 등등 모든 분야를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집어넣고, 각 분야에 대한 세부 직무능력을 표준화하여 이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쩌면 한두 개 대학원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전국 20여 개 대학원에서 모두 그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과 민간의 기본적인 기록관리 방법론과 지식영역에 대한 ‘기본기’이와 ‘숙련’이다. 굳이 의사와 비교하자면, 기록관리 대학원 석사 졸업자의 자격은 ‘의과대학 6년+국가고시 합격자’ 수준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각 세분화

된 영역의 기록관리 전문가는 의사면허를 가지고 ‘인턴+레지던트의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전문직 시험’까지 합격한 전문의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후자의 전문영역까지 기록관리 대학원에서 전문성을 완벽하게 담보하기는 어렵다. 즉, 대학원에서의 숙련이 기록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최종적인 숙련의 완성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영역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같은 직능단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sup>17)</sup>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기록관리 전문직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12)를 하고, 협회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김혜영 등, 2021)도 수행된 바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그렇다면 전문가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앞서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나 박물관진흥법에 따른 학예사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통용되는 자격을 규정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사서나 학예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은 민간의 도서관, 박물관(또는 미술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sup>18)</sup> 기록전문가도 앞의 진단에 따라 민간 기록관리를 포괄할 수 있는 기록관리 직무영역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전문가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존기록 관리 영역(아키비스트)과 현용·준현용기록 관리 영역(레코드매니저)의 전문가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란 이름으로 함께 교육받고 전문가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전문가의 직무능력이 더욱

17) 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는 노동기록관리를 전문적으로 경험했던 Y가 보내준 장문의 글이 큰 도움이 되었다.

18) 물론 사서의 경우에도 현재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전공자의 경우 졸업만 하면 2급 정사서 자격증이 부여되어, 이것이 사서의 전문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외부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예사 자격제도 역시 전문인력에 대한 최초의 국가인증제도라는 의의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존재한다. 박물관이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추세에서 직종 구분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무경력 인정제도의 현실적인 부실성이나 준학예사 필기시험의 전문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관리 제도연구반, 2012, 15-16.).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이상(理想)은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기록 전문가가 기관의 행정 업무와는 상관없이 기록을 선별·평가하고, 보존 기록을 정리·기술하는 모습이겠지만, 대통령조차 쉽게 바꾸기 어려운 현행 공무원 문화와 시스템(대표적으로 순환 보직을 통한 제네럴리스트 양성과 승진을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직급 체계 등) 속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기록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렬을 새롭게 그려볼 수는 없을까? 일각에서는 현재의 전문요원이 ‘기록행정직’화되어 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이영남, 2018, 75), 다른 한편에선 기록전문가가 행정가로서의 자질도 함께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장환, 2015, 153-158). 이와 관련하여 최근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배치되고 있는 한 기록연구직의 이야기도 들어보자(협회원, 2016, 103).

“지나칠 정도로 세밀한 법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평가, 거기에도 상급기관의 유형별 관리기준, 표준까지 합쳐졌을 때, 과연 각 지방에 있는 개별 특행에서 기록연구직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상태에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역량보다, 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냥 결정된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이면 충분한 것이 아닌가?”

위 이야기에 동의한다. 이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획일적인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공공 영역에서, 특히 RM 영역에서 기록행정직으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기록전문가를 행정직화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10여 년 전에는 위로부터 기록전문가의 석사 자격을 의심하는 공격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필요에 의해 기록전문가의 자격과 채널을 다원화하고 내실화하는 시도를 해야 할 때라 생각할 따름이다.

다만, 최근의 기록관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sup>19)</sup> 여전히 기록관에서의 기록전문가 영역은 중요하다. 미국의 뉴욕공공도서관이나 주립아카이브 사례와 같이 전문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연구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의 전문인력은 기록행정직을 신설하여 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초단체까지 기록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화하여 아키비스트 또는 레코드매니저를 배치하는 것이 지방의 기록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레코드센터나 아카이브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레코드매니저나 아키비스트가 있고, 그와는 다르게 테크니션(technician) 직급이 별도로 존재한다. 미국 NARA의 경우, 아키비스트, 아카이브 스페셜리스트, 아카이브 테크니션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아키비스트는 최소 대학 학위 이상 소지자를 자격 요건으로 한다. 오레곤 주립 아카이브의 레코드매니저나 뉴욕공립도서관의 아키비스트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국가기록원, 2012, 296).

2019년에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인력’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실제 개정되지는 않았다. 당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전문인력의 정의가 모호하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개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기록관과 아카이브에서 수행하는 업

---

19)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만하다. 다만, 필자는 기록관의 기능을 확대하더라도 그 범주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국가기록원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임희연. (2018). 기록관의 새로운 모델, 통합기록관: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기록학연구, 58, 31-63; 주현미, 김익한. (2018).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록관 기능 확대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129-154; 임진수. (2019).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건립 및 운영 방안: 법무부 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9, 321-353 등.

무 중 아키비스트(또는 레코드매니저)가 해야 할 일, 기록행정직 또는 테크니션 등 전문요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수행 업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역할에 따른 직무영역과 직무능력 표준 역시 세분화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에 기반을 두고 공공 영역에서 전문인력으로 운용될 수 있는 직렬을 신설하고 직제에 반영해야 한다.<sup>20)</sup>

정리하자면, 민관을 아울러 보존기록과 현용기록,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 기업기록과 NGO, 필름 아카이브를 비롯한 영상 아카이브, 그리고 아트 아카이브 등 다양한 기록관리 영역을 유형화하여 최대한 공통 직무(또는 지식)와 전문 직무로 도출하고, 그에 따라 전문가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아카이브에는 아키비스트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박사학위 또는 현장 근무 10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공공기관 레코드매니저의 경우 소정의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 밖에 기록관 또는 아카이브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기록행정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현실에 맞는 직렬을 신설하여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공공 영역이긴 하지만 특화된 영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영상자료원과 같은 필름아카이브, 예술자료원 같은 아트 아카이브 등이 그것이다. 한국영상자료원에 근무하는 전문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아키비스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법에 따른 전문가 자격 요건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기업기록(특히, 기업의 RM 영역에 대한 전문가는 절실하다.)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영역에서 꾸준히 아카이빙 작업을 하는 사람들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마을 공동체에서 아카이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 프로

---

20) 기타 소수직렬을 통합하여 연구관 자리를 만드는 안이라든가, 기관에 있는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여 자리를 만들고 T/O를 확보하는 안은 1인 기록관 체제와 같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닐 것이다.

그럼을 제공하고 어떤 자격을 부여해야 할지는 좀더 정교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이처럼 기록전문가의 영역을 포괄하고 각각에 맞는 전문성을 연구하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기록관리의 기본에 충실한 대학원 교육과정과 더불어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같은 직능 단체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현재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전문요원으로 단혀 있는 기록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사슴만 가득한 지루한 생태계를 다양화해야 한다.<sup>22)</sup>

#### 4. 공공 영역에 간혀버린 기록관리법

앞서 논의한 전문성과 자격 제도 문제는 사실 법에서부터 그 경계가 명확하게 지어져 있다. 공공 영역이라는 닫힌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뱅글뱅글 돌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공공기관 안에 간혀 있다. 그렇기에 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었지만, 사실은 여전히 2007년법 역시 공공기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 역시 학예사나

---

21) 이와 관련하여 기록연구사 P는 필자에게 이야기했다.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데도 사람을 뽑는 곳은 기록관리 직렬이 유일한 것 같다고. 학예연구직이나 편사연구직의 사례와 비교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그 와중에 민간의 작은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비공식) 아키비스트는 분명한 사회적 수요와 필요에 따라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록공동체가 끌어안고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22)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직종인 의사의 경우, 전문의가 되는데 10년가량 걸린다. 공공기관의 20년차 기록연구사 J는 이야기한다.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야 할 때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서와 달리 공공기관으로 국한되어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 학계나 실무 현장에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병우 등(2012)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여 공공 영역과 함께 민간 기록관리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익한(2018) 역시 이에 동의하며 시장과 기업, 사회의 공정성 확장의 논의에 맞추어 공공 영역과 함께 기업과 사회의 기록관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규제와 권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오성진(2015)도 국가기록원이 학계와 협회, 민간의 의견을 수용하여 「민간기록관리진흥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계수(2015)는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록물 관리 기본법」으로 개편하고,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증·기탁·위탁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기록관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여러 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9년 기록관리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굳이 되새김할 필요는 없겠으나,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정부기록보존소 내부의 개혁 움직임(당시 소장 김선영)과 그 바탕이 되었던 시민사회 영역의 움직임을 우리는 상기해 봐야 한다. 당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는 1995년부터 정보공개사업단을 설립하여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고, 1998년에는 대통령기록법 제정 운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역사학과 문헌정보학계 내에서 기록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각국의 기록관리 선진 사례 연구가 이어졌다. 그 와중에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등 민간의 학술단체가 설립되어 학계의 기반을 형성했다(김익한, 2007, 76-78). 굳이 이러한 전사를 돌아보는 까닭은 기록관리라는 종속변인에 대한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이 바로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운동 결과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어서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기록관리법이 행정절차 중심의 공공기록을 위한 법에 머물러 있음은 안타깝기만 하다. 이미 시민사회

의 요구 수준은 변태(變態)를 요구하고 있는데, 변태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공공기관의 행정절차의 고리에서 벗어나 민간 기록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유관 분야인 박물관·미술관을 위시한 예술 분야와 도서관 분야를 살펴보자.

박물관진흥법을 보면,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그리고 적용 범위는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이다(법 제5조). 즉 이 법은 법규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요건(시설, 인력 등)을 갖춘 어지간한 기관은 모두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범주 안에는 ‘문서관’, ‘보존소’도 포함되어 있다. 과연 이 모델을 우리 기록공동체에 적용하여 기록관을 육성하고, 진흥시키고,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등 민간까지 원활하게 기록관리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까?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sup>23)</sup>

또 다른 모델을 도서관 분야에서 찾아보았다. 바로 작은도서관 모델이다.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정의(제2조제4항) 내에서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

---

23)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기록전문가 Y는 설명 아키비스트 채용을 등록요건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각종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박물관진흥법에서 규정하듯 주차공간을 증설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면 굳이 박물관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수궁할 수밖에 없었다.



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에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서 배치 기준으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최소한의 면적과 규모로 작은도서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립의 경우 전문인력 배치는 의무가 아닌 재량임을 알 수 있다. 2006년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주민의 독서진흥활동을 문체부에 보고를 의무화했는데, 그 이후 2009년 「도서관법」에 그 개념이 명시되었고, 2012년에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8년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오랜 시간을 지내오며 이미 상당 부분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 시민들의 독서에 대한 욕구와 국가의 독서진흥 정책이 맞물려 작은도서관 설립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국정주요 과제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채택되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된 점은 특이할 만하다.

작은도서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로 지정될 경우, 작은도서관 조성비, 주민대상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에 어울리는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작은도서관에 관하여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는 까닭은, 최근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카이빙에 대한 수요를 면면히 살펴보면,

박물관진흥법보다는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시민사회에 작지만 다양한 아카이브들이 설립되는 데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이미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작은 아카이브’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기록관이나 아카이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않을 뿐이다. 그럼에도 박물관진흥법에서와 같이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민간영역에서 생기는 작은 아카이브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학예사와 같이 특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만이 전유할 수 있는 ‘취업’ 장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영남(2008)은 ‘마을아르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며 국가 주도의 기록관 한계를 지적하고 마을에 밀착한 공동체형 아카이브를 이야기한 바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곽건홍(2009)은 지속적인 기록관리 발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카이브,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가 상호 공존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작은도서관 모델이 “더 많은 아카이브,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의 구호에 걸맞는 모델이라 생각한다.

한편으로, 작은 아카이브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지원 체계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경제적인 문제는 개인에게 있어 실존적인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 분야 사례를 보면, 진흥원 설립을 통한 예술진흥 및 지원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사업, 문화예술교육 학술 연구 및 조사 등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그중에서도 진흥원은 예술강사 지원 사업과 같은 여러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 또는 활동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예술강사를 선정하고 이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문화예술 전공자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일정 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교육 분야에서 활동할 수가 있다.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받는 예술 분야에 비해 그 인프라가 부족한 기록관리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레퍼런스로 검토해볼 만한 모델이다.

이처럼 다른 분야의 각종 모델들을 생각해보면, 국가기록원에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국가의 기록관리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한국기록관리진흥원’(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민간 기록관리를 활성화하고 척박한 이 땅에 기록관리 문화를 하루빨리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5. 그리고, 산업계의 고사

기록관리 생태계의 구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은 보는 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학계 및 현장(공공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과 함께 산업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약간의 비약일 수 있으나, 전자공학계에서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는 것과 같다(임종철, 2015, 138).

그러나 IBM이나 EMC와 같은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이 ECM(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 차원에서 각종 솔루션과 상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각 기업에 활발히 보급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기록관리 산업계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기업의 현실은 처참하기만 하다(김익한, 2009, 87).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기록관리 관련 전문기

업들은 도산하거나 업종을 바꾸었고, 남아 있는 회사들도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산업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글들은 찾아보기 매우 어려웠다. 특히 공공기록관리 중심의 현 기록관리 생태계 내에서 산업계는 가장 만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다. 어느 기록관리 전문기업에 재직하는 중견 기록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아키비스트라운지, 2018).

“우리가 주관사업자가 아니라 하도급으로 참여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주관사에서 나는 무시하면서 기록연구사에 대해서는 ‘기록 연구사분들에게 이렇게 해드려’라는 식으로 대했다. 같은 공부를 했고 직장만 다를 뿐인데 왜 그러는지 의아했다. 나도 기록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걸 주관사 사람이 모르나 싶었다. 그리고 교육을 하러 갔는데 내 동기, 선배, 후배들이 있는 곳에서도 그 주관사 사람이 나를 함부로 했다. 그때에는 우울하기도 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동기들은 한참 공공기관에 많이 입사하고 있을 때여서 나도 기록연구사가 되어야 하나 싶었다.”

기록관리계 내에서 전문기업은 공공기관의 손발이 되어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업체직원’은 파트너가 아닌 계약서상 ‘을’에 불과해 보인다. 연구자가 만나 본 기업의 많은 기록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힘들어했다. 동급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 수준은 산업계에 속해 있는 기록인들의 자존감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은 결국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기록관리는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여러 전문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기록관리 산업계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의 영역은 주로 기록관리시스템 개발·구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기록관리 컨설팅 영역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임종철, 2015, 134-139), 당시 기록관리계의 전문기업들은 각 영역에서 모두 활발히 사업을 진행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시스템 분야를 보자.

2003년 당시 정부기록보존소는 자료관시스템의 기능 요건과 메타데이터 규격을 제시한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을 고시하였고, 기록관리 전문기업 16개가 규격을 준수하는 자료관시스템을 개발하여 2003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인증을 받았다. 자료관시스템은 2003년 12월에 중앙행정기관 자료관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각 기관에 구축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 12월 기준으로 582개 기관이 구축하였다(박석훈, 2010, 1).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에 이렇게 빠른 도입과 구축이 가능했다. 자료관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각 기업에서 어떤 모양의 시스템을 만들든 규격만 맞추면 되는 시스템이었다. 그에 대한 인증은 국가기록원에서 수행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 시기, 자료관시스템을 대신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을 개발했던 까닭은, ISO 14721 정보 모델과 기능 모델을 적용하여 전자기록의 진본 유지 기반을 구축해야 했기 때문이었다(임진희, 2005, 41-90). 표준RMS는 “기록관리 법제가 요구하는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성(functionality)뿐 아니라, 업무 지원에 있어서 기록전문직의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이용편이성(usability)을 갖추”기 위해 개발되었다(이소연, 2014, 50).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표준적인 모델이 필요했다. 자료관시스템 당시 제대로 인증되지 않아 중구난방으로 시스템이 난개발되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표준RMS 애플리케이션이 국가기록원 주도로 급속히 보급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표준RMS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아카이브 스토리지와 PDF 변환 서버, 검색엔진과 레포팅 툴, 대용량 송수신기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했다(이

소연, 2014, 50-51). 그러다 보니 업체에서는 별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과 R&D에 신경 쓸 여력도 필요도 없게 되었고, 열심히 영업을 하고 시스템을 개발·구축해봤자 대부분의 수익은 외산 스토리지 업체로 넘어갈 뿐이었다.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영똥한 사람이 벌고 있는 모양새다.

표준RMS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실증적인 연구<sup>24)</sup>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이소연 등(2014)은 “미국이나 영국, 유럽연합은 국가 단위로 ERMS 설계표준을 개발하고, 이 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된 복수의 시스템 중 하나를 기관 사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사실 과거 자료관시스템 모델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해당 시스템을 제대로 개발할 전문가도 부족했고, 이를 인증할 전문가도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학계에 부족했다.

각 기관에서 표준RMS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자료관 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 기관에 따라 3억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2,0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상황이었다(이소연, 2014, 50-51). 물론 국가기록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자원이 투자된 표준RMS가 제2의 자료관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유영문, 2018, 235-279), 표준RMS는 10년이 채 못 되어 거대한 레거시(legacy) 시스템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표준RMS는 “불행히도 그 결과는 경쟁도, 평가도 없이 화석화된 고가의 장비”(이소연, 2014, 51)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

24) 이소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개선전략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1), 2015, pp. 29-52; 이소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현황 연구」, 『기록학연구』 43, 2015, pp. 171-102; 박민영,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능 평가: 접근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8, 2013, pp. 3-35; 이보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평가·폐기 기능 평가」, 『기록학연구』 38, 2013, pp. 37-73 등 다수.

오늘날 외부 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볼 때, 누군가의 말처럼 표준 RMS와 같이 시스템을 정부가 소유하고 일방적으로 배급하는 방식은 예산 절감의 측면에서도, 기술 진보의 측면에서도 이제 큰 의미가 없다(김익한, 2018, 199). 그 와중에 돈을 번 기록관리 회사도 거의 없다. 대부분의 기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DB 구축 사업이나 기록물 정리 사업 외에는 딱히 기록관리 생태계에서 발붙일 영역이 사라져버렸다. 지구 온난화로 발붙일 곳 없어진 말라비틀어진 북극곰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는 와중에 최근 몇 년 사이 기록관리 생태계를 둘러싼 전산 환경도 드라마틱하게 변화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보편화되고,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오픈소스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변화했고, 그에 맞춰 표준RMS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미 전환하였다. 여기에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까지 하나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함으로써 기록정보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활용하고, 또 운영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김기정, 신동수, 2018, 50).

이 외에도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급성장하고, 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의 등장은 세상을 발각 뒤집어 놓았다. 2018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대 오픈소스 코드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GitHub)를 인수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안대진, 2019, 1).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 함께 챗GPT를 내놓으면서 AI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거대한 기술 발전의 물결 속에서 우리 기록관리 전문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일부 회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록관리 소프트웨어를 런칭했지만, 그 반향은 극히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기록관리 산업계가 기록 생태계 내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다른 분야를 보면, 보통 산업계가 기술 발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학제적 성격의 실용학문인 기록관리는 더욱더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고, 학제적인 성격이기에 대학에서의 기술개발도 중요하다. 모든 산업은 산-관-학의 세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발전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산업계는 해당 분야의 발전에 큰 기준 역할을 한다. 기록관리 생태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기록학계와 현장뿐 아니라 산업계의 발전도 병행되어야만 한다(임종철, 2015, 138-139). 그러나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만, 우리의 기록학계는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 기록관리 생태계에서 산업계의 생존은 불투명해 보인다.

앞으로는 국가 주도형 시스템 개발에서 벗어나 학계와 협력하여 기업에서 자생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정보(기록)가 유통될 수 있는 프로토콜과 규격만 정의하고, 민간의 전문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오픈소스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기존의 JAVA 기반의 시스템 개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자료관 시스템이 철저하게 공공기관의 기록물만을 받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인증되었다면, 앞으로 개발될 기록관리시스템도 그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즉, 여전히 공공기관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도 포괄할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국가기록원의 역할과 정책의 수준도 지금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도 속에서 좌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의 닫힌계 안에 머물지 말고 민간 영역에 진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외국의 사례와 같이 MoReq이나 DoD 같은 기능 요건부터 ISO 표준까지 기록과 정보의 유통을 위해 어느 선까지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관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국가기록원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 그리고 고민



의 폭과 깊이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앞에서 주장했듯이 민간 영역—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시장—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들이 뿌리내리고, 그래서 각 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경험치와 사례가 누적된다면 쉽게 풀릴 문제일 수도 있다. 공공 영역의 닫힌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고사하고 있는 산업계에 대한 실마리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 기록인들이 중지를 모아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 6.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의 방향성, 전문성과 지역화

글이 많이 산만함을 고백한다.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얇은 지식과 부족한 글쓰기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그만큼 기록관리 생태계의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해본다. 다른 한편으로, 어쩌면 지금까지의 논의는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회피’일 수도 있겠다. 물론 국가기록관리 혁신은 중요하다. 적폐를 청산하고, 묵은 때를 벗겨내고, 그럼으로써 국가기록원이 진정한 국립아카이브로 쇄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연구자는 국가기록관리, 또는 국가기록원의 혁신 이상으로 우리 기록공동체의 전문성 확립과 지역화를 통한 기록관리 문화의 확산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이 없더라도 사람과 시설을 필요로 하고,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상황이 되어야만 우리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누군가의 말처럼 한 눈은 적폐를 보

---

25) 기록연구사 P가 나에게 보낸 메일 중 일부.

더라도, 또 다른 한 개의 눈으로는 10년 동안 방치됐던 곳에서 자란 가능성의 씨앗을 봐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이영남, 2018, 53).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큰 흐름의 한 축은 ‘전문성(professionalism)’이다. 이 글은 우리 기록학이라는 학문의 역할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는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지식체계를 갖출 것인가, 즉 기록학이라고 하는 지식 구조(knowledge structure)에 대한 고민이었다. 실천적 학문인 기록학은 굳건한 학문적인 기반 위에서 실무에서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기록학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뿐만 아니라, 기록관리의 전통적인 영역인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역사에서부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시적인 일상까지 소통을 통해 증거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학문이다. 학문의 지식구조와 교수자의 전문성, 그 안에서 양성되는 기록전문가의 자격 등이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의 다른 한 축은 ‘지역화(localization)’이다. 지역화를 언급한 이유는, 기록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실용적인 적용에 있어 지역화를 통해 기록학 방법론을 일상과 정치의 영역에 적용 가능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도서관 분야의 작은도서관 사례를 인용하여 더 많은, 작은 아카이브를 언급한 까닭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을 기반으로 기록 역시 충분한 개방성과 공유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방성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장(場)’의 개념이다. 공유성은 내가 가진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시너지와 가능성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방성과 공유성에 기반을 둔 지역의 장소(또는 플랫폼) 개념이 기록관리, 특히 공동체 아카이브가 지향하는 발전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작은도서관이 나 얼마 전 이슈로 급부상했던 메이커 스페이스가 추구하는 바도 결국은 사람들이 만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이 일단 만나 연결되면 특정할 수 없지만 ‘어떤’ 가치가 창출된다. 즉, 기록으로 소통

하고, 연결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삶이 정치의 영역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누군가 이야기한 더 작은 아카이브와 민주주의의 연결 고리(곽건홍, 2009, 27)는 바로 사람 간의 소통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믿는다. 이처럼 지역화를 기반으로 어떻게 시민과 정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면 기록관리 생태계는 지금보다 훨씬 다채롭고 건강해질 것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 기록공동체의 모습을 기록관리 생태계로 비유하여 묘사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라는 더 큰 생태계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기록공동체가 기록관리 생태계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생태계가 아마도 우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누군가의 지적은 날카롭다.<sup>26)</sup> 사회라는 생태계 속에서 기록관리 생태계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우리 기록공동체는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건홍. (2009).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기록학 연구, 22, 3-35.
- 국가기록원. (2020). 디지털 기반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능력분석 및 시험평가영역·기준 개발 최종보고서. 대전: 국가기록원.
- 김계수. (2015). 기록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관한 검토. KARMA, 2, 69-74.
- 김기정, 신동수. (2018).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영구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49-70.
- 김익한. (1999). 기록관리체제의 개혁과 기록과학의 과제. 정신문화연구, 22(2), 225-241.
- 김익한. (2007).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기록학연구, 15, 67-93.
- 김익한. (2009). 기록관리법 10년, 다시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제언. 기록학연구, 21, 413-429.

---

26) 이 글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록전문가 M의 일갈이었다.

- 김익한. (2018). 왜 다시 기록관리 혁신인가?: 소통, 기술, 협치를 향해. 기록학연구, 55, 178-179.
- 김장환. (2015). 행정이 vs 아키비스트,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 KARMA, 2, 153-158.
- 김정은, 김익한. (2012). 기록관리분야 직무능력표준 개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1, 43-93.
- 김혜영, 이경남, 김장환. (2022). 기록관리 전문가단체의 교육 서비스 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 연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1), 1-25.
- 박문재. (2019). 나는 지금도 퇴근하고 술을 마신다. KARMA, 6, 36-45.
- 박미애. (2010).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법제화 연구. 기록학연구, 25, 132-196.
- 박민영.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능 평가: 접근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8, 3-35.
- 박석훈. (2010). 자료관시스템 전자기록의 마이그레이션 절차 개발. 서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설문원. (2016). 기록학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8회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
- 손동유. (2019). 민간분야 공동체 아카이빙의 성과와 과제. 실천민속학연구, (34), 39-63.
- 아키비스트 누룽지. (2016). 기록관리 '있어빌리티' 그리고 아키비스트 2.0. KARMA, 4, 148-155.
- 아키비스트라운지. (2018). 아키비스트가 말하는 아키비스트 인터뷰시리즈 5. <[https://archivistlounge.wordpress.com/2018/09/27/아키비스트가-말하는-아키비스트-05\\_김화경/](https://archivistlounge.wordpress.com/2018/09/27/아키비스트가-말하는-아키비스트-05_김화경/)> [확인 일자: 2023. 12. 26.]
- 아키비스트라운지. (2022). 학위논문 현황(2023년 3월 기준). <<https://archivist.co.kr/2022/03/18/%ec%a1%b8%ec%97%85%ec%9e%90-%eb%85%bc%eb%ac%b8/>> [확인 일자: 2023. 12. 26.]
- 안대진. (2019). 기록시스템의 오픈소스 전략 연구. 서울: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병우, 이상민, 심성보, 남경호, 김진성, 오동석, 정태영. (2012).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 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기록학연구, 34, 3-28.
- 오성진. (2015).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으로의 영역 확대. KARMA, 2, 25-26.
- 유영문. (2018).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의 기능 현황 및 발전방향: 10년의 운영 경험과 기능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7, 235-279.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 이보람.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평가·폐기 기능 평가. 기록학연구, 38, 37-73.

- 이소연. (2011). 기록관리와 전문성: 실천으로만 보장받는 배타적 특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113-138.
- 이소연. (2014). “표준RMS” 도입 및 유지 전략. KARMA, 1, 48-53.
- 이소연. (2015).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개선전략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1), 29-52.
- 이소연. (2015).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현황 연구. 기록학연구, 43, 71-102.
- 이승휘. (2008).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위한 인증제는 필요하다. 기록인, 2, 121.
- 이승휘. (2010). 기록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기록관리법령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 이영남, 조민지. (2017). 민주주의 관점으로 본 국가기록관리체계 평가와 전망. 기록학연구, 53, 5-43.
- 이영남. (2008).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 221-254.
- 이영남. (2018). 국가기록혁신과 기록담론. 기록학연구, 56, 49-80.
- 이영남. (2019). 기록의 정치성에 관한 몇 가지 단상. 국가기록원 제1차 기록관리 정책포럼 발표자료.
- 임종철. (2015).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KARMA, 2, 134-139.
- 임진수. (2018).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건립 및 운영 방안: 법무부 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9, 321-353.
- 임진희. (2006).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보존정보패키지(AIP) 구성과 구조, 기록학연구, 23, 41-90.
- 임희연. (2018). 기록관의 새로운 모델, 통합기록관: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기록학연구, 58, 31-63.
- 장덕현. (2008). ‘선(先)’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인증제, 문제있다. 기록인, 2, 120.
- 조동일. (1993). 우리 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 조영삼. (2003). 전문직력제도의 현상과 기록연구직렬. 기록학연구, 7, 149-164.
- 주현미, 김익한. (2018).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록관 기능 확대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129-154.
- 지수걸. (2003). 기록연구직렬 제도화를 위한 현실적 조치. 기록학연구, 7, 2, 166-167.
- 최재희. (2007).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제정의 배경과 목적. 기록인, 1, 58-61.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관리 제도연구반. (2012). 기록관리 전문직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전문가협회, 15-16.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혁. <<https://www.arte.or.kr/introduction/history/history/index.do>> [확인일자: 2023. 12. 26.]
- 협회원. (2016).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기록연구사가 왜 필요하지?. KARMA, 5, 102-105.
- Passmore, J. & Theeboom, T. (2016) Coaching psychology research: A journey of development in research. In: van Zyl, L. E., Stander, M. W. & Odendaal, A. (eds.) *Coaching Psychology: Meta-theoretical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in Multicultural Contexts*. Springer, 27-46.